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 점검일시 : 2019.02.18 (월)

□ 점검결과

◆ 점검자 : 정달영, 정진혁, 최영준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우수박스 종점부 작업장 진입구간 주변 추락 우려 구간에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 및 작업중에 추락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조치하기 바람.
 - 또한, 종점부 주변 교통방송 지하층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은 관련 규정에 맞도록 보안을 실시하기 바람.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가설통로 안전(방재시설부)

- 보도육교 강교작업장에는 도장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시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 작업장 상부에는 안전난간 기둥만 설치된 상태로 작업간에 근로자 추락 및 전도 재해가 우려되니 조치하기 바람.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소방재난본부 주변 우수박스 시점부 및 교통방송 지하층 주변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추락 및 전도 방지 안전시설물은 설치가 미흡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전도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강교를 거치한 받침목이 각목을 사용하였거나 다단으로 불안정하게 쌓아올려 전도재해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작업하고 있으므로 거치전 계획 및 현장상태를 관리감독 요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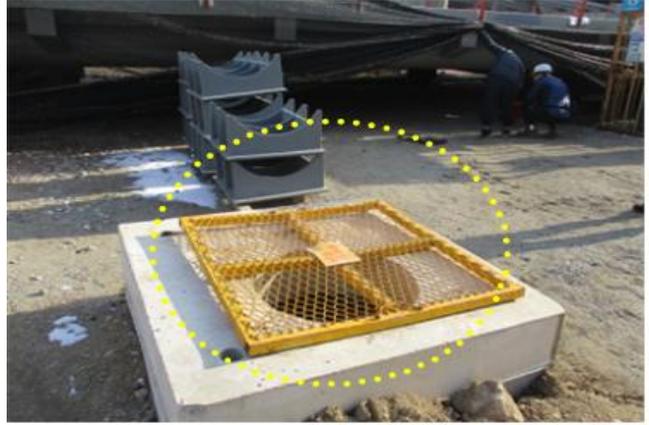


○ 전도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작업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 맨홀(개구부)에는 덮개가 덮여져 있으나,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 이동 또는 외부 하중으로 인하여 뒤집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니 견고한 상태로 고정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및 전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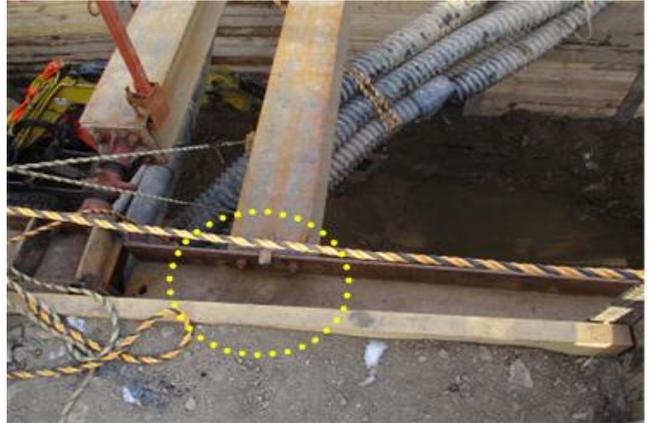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흙막이가시설 안전(방재시설부)

- 우수박스 암파기 작업장 가시설 일부 구간에 스티프너가 누락된 구간이 있으니 확인을 실시하고 보완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방지)



○ 기계기구 안전(방재시설부)

- 커팅기 등 작업장에 반입되는 모든 위험기계 기구류는 반입전 및 정기검사(매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하여 관리하기 바람,

- 커팅기 회전축이 노출된 상태로 작업시 근로자 협착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호커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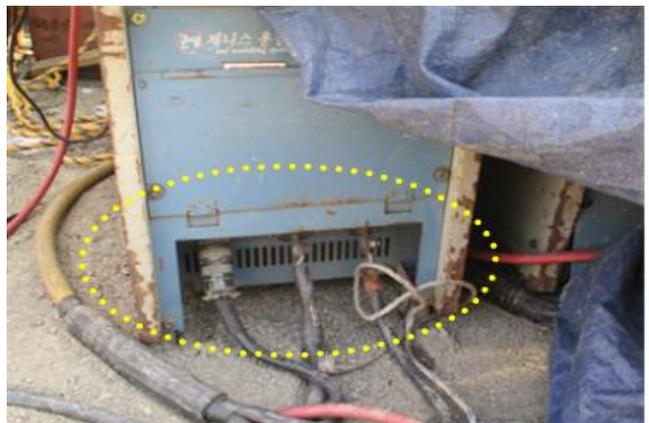
※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028(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감전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강교 작업장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용접기의 충전부 방호가 미흡하여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보완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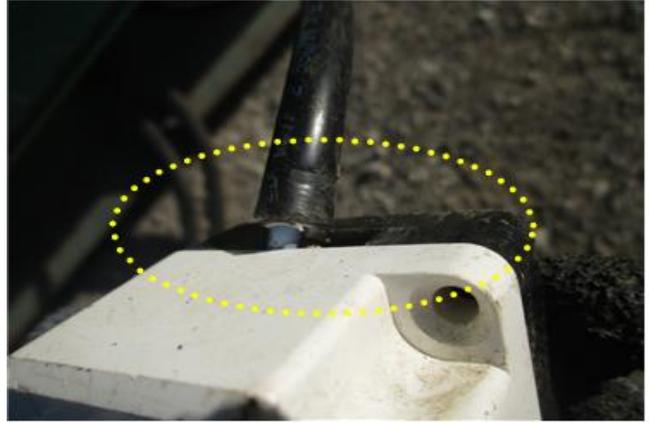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감전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발전기에 비치된 가설전선 접지선이 단락되었으니 가설전선 사용전 접지선이 있는 것으로 교체 후 작업 요함.

※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17(가설전선)



○ 사면 안전(방재시설부)

- 우수박스 시점부 작업장 주변에는 기존 박스구조물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주름관을 이용하여 하부로 물돌리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부 구간 연결부위 조치가 육안상 미흡하고 하부 구간은 청타지를 사용하여 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어 누수 등으로 인한 작업장 내 지반 침하가 우려되니,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건설기계 안전(방재시설부)

- 점검시 굴삭기가 엔진점검용 보호커버를 열어젖힌 상태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연결교량 구조물과 충돌우려가 있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건설기계 작업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기 바람.

※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029(건설기계)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위험물 저장소 외부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관리하기 바람.

※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 024(위험물보관소)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가스용접기의 가스용기를 위험물보관소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폭발시 연쇄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중인 가스용기는 전용대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만 위험물보관소에 적치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요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 품질관리(방재시설부)

- 현장 용접 및 도장이 진행중인 강교의 특별시방서 없이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시방서를 제출받아 시방서에 준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관리 요하며,

- 용접으로 인한 용융등 단면손상부 등이 있으니 조치 요함.



○ 품질관리(방재시설부)

- 아직 현장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강교거치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도장 후 도장이 벗겨지지 않는 양생시기를 지난 후 거치 작업 요함.

